

## 자주 묻는 질문

2012

년 9월14일 갱신 자주 묻는 질문

지난 3년 동안 행정부는 이민 집행 제도를 공중 안전, 국경 안보 및 이민 제도 통합에 집중하는 제도로 변경시키기 위해 전체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토안보부(DHS)는 특히 폭력범, 중죄인 및 상습범과 같은 범법자를 비롯하여 국가 안보나 공중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는 사람의 제거에 집행 자원을 계속 집중하므로 국토안보부는 이민으로서 미국에 왔으며 다른 주요 지침을 충족하는 개인들과 같은 우선순위가 낮은 케이스에 집행 자원을 소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타당한 경우 기소 재량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아래의 지침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사람들은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2년 기간(갱신 조건)의 유예 조치 고려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용 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2012 년 6월 15일 현재 31세 미만이었으며
  2. 16 회 생일에 이르기 전에 미국으로 왔으며
  3. 2007 년 6월 15일 부터 현재까지 계속 미국 내에 거주하였으며
  4. 2012 년 6월 15일에 고
  5. 2012 년 6월 15일 이전에 고  
만료되었으며 ,
  6. 현재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였거나 고등학교로부터 수료증을 받았거나 종합교육개발(GED) 증서를 받았거나 미국 해안경비대나 군대의 명예 제대 재향군인이며 또한
  7. 중죄, 중대한 경범죄 3회 이상의 기타 경범죄 판결을 받지 않았으며 달리 국가 안보나 차인에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다.
- 문의할 하거나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절차에 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800-375-5283

[www.uscis.gov](http://www.uscis.gov)를 방문하십시오.

###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절차 비디오 시청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안내](#)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요청 지침](#)

\* [교육](#)

\* [여행](#)

\* [국가 안보 및 공중 안전](#)

[신청 절차](#)

[증거](#)

[결정 및 갱신](#)

[다른 이민 절차가 진행 중인 케이스](#)

[사기 회피 및 방지](#)

###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안내

**문1: 유예 조처란 무엇인가?**

답1: 유예 조처란 직권자랑 조처로서 개인의 추방 조처를 유예하는 자랑 결정입니다. 유예 조처는 개인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케이스가 유예된 개인은 유예 조처가 시행되는 동안 미국내 불법 체류를 누락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유예 조처는 이전의 또는 그후의 불법 체류 기간에 대해 개인을 사면해주지 않습니다.

기존 규정 하에서 케이스가 유예된 사람은 “경제적추업 필요성”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유예 기간 동안 취업 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자체 자량으로 언제든지 유예 조처를 종결시키거나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문2: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처란 무엇인가?**

답2: 2012년 6월 16일에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민으로서 미국에 왔으며 몇몇 주요 자침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2년 기간(갱신 조건)의 유예 조처 발표하였습니다 .

이 자침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 가능한 문서로 입증할 수 있는 사람들만 유예 조처의 고려 대상이 됩니다. 결정은 국토안보부 장관의 공문에 명시된 자침에 의거 개별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3: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처 고려 절차에 따라 나의 추방이 유예된 경우, 취업 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

답3: 예 기존 규정에 따라 케이스가 유예된 경우 경제적 추업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미국이민국으로부터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4: 현재 요청자의 추방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최종 추방 명령이 내려졌거나, 자발적 출발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이 절차가 나에게 적용됩니까?**

답4: 이 절차는, 추방 절차를 겪은 적이 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추방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최종 명령이 내려졌거나 , 자발적 출발 명령이 내려진 사람들을(이민 구금 하에 있지 않는 한) 포함하여 고려 자침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민 구금 하에 있지 않으며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처 고려 승인을 요청하려는 경우 아래에 약속된 절차에 따라 요청서를 이민관서 집행국이 아닌 미국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이민 구금 하에 있으며 자침을 충족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미국이민국의 유예 조처 고려를 요청하지 말고 구금 담당관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리거나 888-351-4024

미국이민국 열리인을 통하여(올 오전 9시오후 5시 직원 근무 [EROPublicAdvocate@ice.dhs.gov](mailto:EROPublicAdvocate@ice.dhs.gov)를 통하여 이메일로 이민관서 집행국의 대중응호실에 문의하십시오

**문5: 나의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처 고려 요청이 거부 중인 경우 나는 불법 체류를 누락하는 것인가?**

답5: 요청 시에 18세 미만인 경우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처의 고려 요청이 거부 중인 동안 불법 체류 계속 누락하는 것입니다. 요청서 제출 당시에 18세 미만이지만 요청이 미국이민국에 거부 중인 동안 18세가 된 경우, 요청이 거부 중인 동안은 불법 체류가 누락되지 않습니다. 케이스가 유예되는 경우, 유예 조처 기간 동안 불법 체류를 누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하의 케이스에 대한 조처가 유예되더라도 이전에 누락된 불법 체류가 사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6: 나의 케이스가 유예된 경우, 유예 기간 동안 나의 신분은 합법적인가?**

답6: 아닙니다. 비록 케이스에 대한 조처가 유예되고 유예 조처 기간 동안 불법 체류를 누락하지는 않더라도 유예 조처는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 불법 체류”와 “불

또는 (2) 국토안보부가 승인한 체류 기간 종료 후에(비자에 의해 승인된 체류 기간이 종료된 후와 같은 경우) 미국 내에 체류하는 기간을 지칭합니다. 불법 체류는 해당자가 미국을 떠나고 후에 재입국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민목적법 212(a)(9)항에 기술된 불법 체류에 대한 입국불허 제재가 개인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동 불법 체류 제재는 보통 3년 및 10년 제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법 체류를 누락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귀하가 미국에 머무는 동안 합법적 신분에서 있는지 여부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국토안보부가 귀하의 케이스에 있어서 조치를 유예할 당시에 귀하의 합법적 신분이 같아지기 때문에 불법 신분에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법적 제한 및 금지 사항의 적용을 계속 받게 됩니다.

**문7: 유예 조치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으로 진행되는 경로를 나에게 제공하는가?**

답7: 아닙니다. 유예 조치는 합법적인 영주권자 신분이나 시민권으로 진행되는 경로를 부여하지 않는 일종의 직권 자량입니다. 오직 의회만 입법 권한을 행사하여 이러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문8: 나의 케이스가 유예되는 경우, 2014년에 시작되는 감당할 수 있는 보험 교환을 통하여 보험료 세금 공제 및 비용 분담 감소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답8: 아닙니다. 보건후생부와 재무부는 이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를 받은 사람들을 보험료 세금 공제 및 비용 분담 감소 수혜 자격으로부터 면제하기 위해 필요한데 까지 해당 규정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S. 3992, 2010 년 외국민 미성년자 가발, 구제 및

**문9: 이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의 고려 대상이 되기 위한 지침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내가 유예 조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답9: 이 절차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발표한 특정 지침을 충족하는 사람만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랜 관행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 간별로 미국 이민자나 이민서 집행국의 유예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문10: 나의 이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요청에서 내가 공유한 정보가 이민 집행 목적으로 사용가?**

답10: 이 요청에 제시된 정보는 미국 이민국의 출두 통지 지침([www.uscis.gov/NTA](http://www.uscis.gov/NTA))에 기술된 기준에 따라 출두 통지 발급 또는 미국 이민서 집행국에 대한 회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이민 집행 절차를 위해 미국 이민서 집행국 (ICE) 및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에 제공되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이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절차에 따라 케이스가 유예된 사람들은 이민서 집행국(ICE)에 회부되지 않습니다. 이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요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기성 주장의 파악이나 방지를 위해 국가 안보를 위해 또는 형사 범죄의 수사나 기소를 위한 경로를 포함하여 추방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이 정보를 이민서 집행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 (CBP)을 비롯한 국가 안보 및 법 집행 기관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상기 정보 공유 정책은 요청자 이외에 가족 및 보호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더라도 통지없이 수정 대체 또는 취소될 수 있는 본 정책은, 일체의 행정 민사 또는 형사 건에 있어서 어느 당사자에 의해서든 실질적이든 절차적이든 법으로 집행 가능한 일체의 권리나 혜택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며, 실제로 조성하지도 않으며, 그런 목적으로 의존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11: 나의 케이스가 이민 집행 목적을 위해 이민서 집행국에 회부되거나 내가 출두 통지(NTA)를 받는 경우, 나의 가족 및 보호자와 관련된 정보가 이민 집행 목적을 위해 이민서 집행국에 이첩되는가?**

답11: 귀하의 케이스가 이민 집행 목적을 위해 이민서 집행국에 회부되거나 귀하가 출두 통지(NTA)를 받는 경우, 귀하의 요청에 수록된 가족이나 보호자와 관련된 정보는 가족이나 보호자에 대한 이민 집행 목적을 위해 이민서 집행국에 이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요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기성 주장의 파악이나 방지를 위해 국가 안보를 위해 또는 형사 범죄의 수사나 기소를 위한 경우를 포함하여 추방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이 정보를 이민서 집행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을 비롯한 국가 안보 및 법 집행 기관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사라도 통지없이 수정 대체 또는 취소될 수 있는 정책은, 일체의 행정 민사 또는 형사 건에 있어서 어느 당사자에 의해서든 실질적이든 절차적이든 법으로 집행 가능한 일체의 권리나 혜택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며, 실제로 조성하지도 않으며 그런 목적으로 의존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12: 현 행정부는 종합 이민 개혁을 계속 지향할 의사가 있는가?**

답12: 예.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제 및 안보 필요를 충족하는 21세기 이민 제도를 구축하는데 이러한 조치가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행정부는 DREAM 법을 포함한 종합 이민 개혁의 통과를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문13: 새로운 절차를 고할 때 DREAM 법의 통과가 여전히 필수적인가?**

답13: 그렇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유예 조치 고를 요청하도록 허용하는 국토안보부 장관의 6월 15일자 공문은 국토안보부가 집행 자원을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에 위협 요소가 되는 사람들의 추방에 집중하기 위해 추한 일련의 조치 중 최신 조치입니다. 유예 조치는 합법적인 신분이나 시민권을 진행하는 경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DREAM 법의 수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실성을 부여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직 의회만 입법 권한을 행사하여 영구적 합법 신분으로 진행하는 경로와 더불어 제공되는 확실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문14: 현재 비민 신분에 있더라도 본 절차에 의거하여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의 고를 신청할 수 있는가 (예 E-1, E-2, H-4) 또는 일시적 보호 신분(TPS) 구비)?**

답14: 아닙니다. 현재 이민 신분이며 2012년 6월 15일에 합법적 신분이 아니었던 경우에만 본 절차에 의거하여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의 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로 돌아가기](#)

##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요청 지침

**문1: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지침을 충족해야 하는가?**

답1: 국토안보부 장관의 2012년 6월 15일자 공문에 의거하여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을 보여주는 증빙 서류를 포함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1. 2012년 6월 15일 현재 31세 미만이었으며
2. 16회 생일에 이르기 전에 미국으로 왔으며
3. 2007년 6월 15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미국 내에 거주하였으며
4. 2012년 6월 15일에 유예 조치 고려 요청을 할 당시에 실제로 미국 내에 있었으며
5.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경범죄로만 기록되었으며 ,
6. 현재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였거나 고등학교로부터 수료증을 받았거나 종합교육개발(GED) 증서를 받았거나 미국 해안경비대나 군대의 명예 제대 재향군인이며 그리고
7. 중죄, 중대한 경범죄 3회 이상의 기타 경범죄 판결을 받지 않았으며 달리 국가 안보나 차안에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를 위해서는 이 지침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미국 이민국은 특정 케이스에 있어서 유예 조치의 조합 여부 결정에 대한 최종 재량권을 보유합니다.

**문2: 본 절차에 의하여 유예 조치 고려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몇 살이어야 하는가?**

답2:

- 추방 절차를 겪은 적이 없거나 구하의 절차가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요청을 하시기 전에 종결된 경우, 신청당시에 최소한 15세 이상이고 다음 지침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추방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최종 추방 명령이 내려졌거나 또는 자발적 출국 명령이 내려졌고 이민 구금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구하가 신청당시 15세 미만이라도 다른 지침을 충족하면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경우에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012년 6월 15일 현재 31세나 그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위로 돌아가기](#)

## 교육

**문1: “현재 재학 중”이란 유예 조치 고려 요청이 제출된 날짜 관련이 있습니다.**

답1: 본 지침 하에서 “현재 재학 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 절차에 따라 유예 조치 고려 요청을 제출하는 날에 학교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2: 본 지침 하에서 누가 “현재 재학 중”으로 고려되는가?**

답2: 본 지침 하에서 “현재 재학 중”으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다음 학교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공립 또는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 중등 이후의 교육, 직업 훈련 또는 취업에 대한 배치 및 이환 배치를 위해 일하고 있는 곳에 이르도록 고안된 교육, 읽고 쓰기 또는 커리어 훈련 프로그램 (직업 훈련 포함), 또는
- 일반 고등학교 수료증이나 주법으로 인정된 동등 자격 수료증, 출석증 또는 대체 상 포함)을 얻거나 종합교육개발 (GED) 시험이나 기타 주에서 인정하는 동등 시험에 합격하도록 학생들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

이러한 교육, 읽고 쓰기 또는 커리어 훈련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연방 또는 주 정부 보조금에 의해 지금이 조달되는 프로그램들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는 프로그램들은 커뮤니티 칼리지를 포함한 고등교육기관 및 특정 지역사회 기반 단체와 같은 효과가 입증된 교육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 유효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연방 또는 지방 정부 보조금에 의해 지금이 공급되지 않는 이러한 교육, 읽기 및 쓰기 또는 커리어 훈련 프로그램이 그 효과가 입증되었는지 평가함에 있어서 미국이민국은 프로그램의 존재 기간, 일반 고등학교 수료증이나 그와 동등한 인정된 자격을 얻거나 종합교육개발(GED)이나 기타 주에서 인정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학생들을 중등 이후 교육, 직업 훈련 또는 취업에 배치하도록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실적 및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질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들을 고려할 것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등록함으로써 “현재 재학 중”임을 입증코자 하는 사람들의 경우, 프로그램의 입증된 효과를 보여줄 부담은 요청자에게 있습니다.

**문3: 내가 현재 재학 중이라는 것을 어떻게 밝히는가?**

답3: 구하가 현재 재학 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서류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 공립 또는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 등록되어 있다는 증거 또는
- 중등 이후의 교육, 직업 훈련 또는 취업에 대한 배치 및 이러한 배치를 위해 일하고 있는 곳에 이르도록 고안된 교육, 읽고 쓰기 또는 커리어 훈련 프로그램(직업 훈련 포함)에 등록되어 있으며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인방 또는 주 정부 보조금에 의해 자금이 조달되거나 또는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증거 또는
- 일반 고등학교 수료증이나 주법으로 인정된 동등 자격 수료증, 출석증 또는 대체 상 포함)을 얻거나 종합교육개발 (GED) 시험이나 기타 주에서 인정하는 이와 같은 시험에 합격하도록 학생들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으며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인방 또는 주 정부 보조금에 의해 자금이 조달되거나 또는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증거.

이러한 등록 증거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교나 프로그램의 이름, 등록일 및 해당되는 경우 현 교육 또는 학년 수준을 보여주는 합격 통지서, 학교 등록 카드, 학교나 프로그램에 보낸 서신, 성적 증명서, 성적표 또는 중간 성적표

**문4: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서류는 어떤 것인가?**

답4: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서류는 공립 또는 사립 고등학교나 중등학교의 고등학교 수료증이나 종합교육개발(GED) 출석증, 공립 또는 사립 고등학교나 중등학교의 대체 상을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증명서를 포함

**문5: 종합교육개발(GED) 증명서를 받았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서류는 어떤 것인가?**

답5: 종합교육개발(GED) 증명서를 받았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서류는 GED 시험이나 다른 유사한 주 허가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주 법에 따라 인정되는 일반 고등학교 수료증과 동등한 자격을 받았다는 증거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문6: 읽고 쓰기 또는 커리어 훈련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자침을 충족할 수 있는가?**

답6: 예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중등 이후의 교육, 직업 훈련 또는 취업에 대한 배치 및 이러한 배치를 위해 일하고 있는 곳에 이르도록 고안된 교육, 읽고 쓰기 또는 커리어 훈련 프로그램에 등록되었을 경우 자침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인방 또는 주 정부 보조금에 의해 자금이 조달되거나 효과가 입증된 교육 기관에 의해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문7: 제2 언어로서의 영어 프로그램에 등록 되어 있을 읽고 쓰기 또는 커리어 훈련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자침을 충족할 수 있는가?**

답7: 예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중등 이후의 교육, 직업 훈련 또는 취업에 대한 배치 및 이러한 배치를 위해 일할 곳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ESL 프로그램에 등록되었을 경우 자침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ESL 프로그램 참여가 중등 이후의 교육, 직업 훈련 또는 취업에 대비와 연결되어 있으며 동 프로그램은 효과가 입증된 프로그램임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증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8: 미국인민국은 내가 교육 자침을 충족하였다는 정황 증거를 교할 것인가?**

답8: 아닙니다. 정황 증거는 귀하가 현재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그 이수증을 받았거나 또는 일반 교육 개발 증서를 받았다는 증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교육 자침을 충족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증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9: 내가 현재 재학 중이며 미국인민국이나의 케이스에 대한 조차를 유예하는 경우, 2년 후에 미국인민국이 유예를 갱신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나는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가?**

답9: 귀하의 요청 시에 귀하가 재학 중이며 귀하의 케이스가 미국인민국에 의해 유예된 경우, 귀하의 연장 요청이 고려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갱신 요청 시에 (1) 귀하가 등록되었던 학교를 졸업하였으며 그리고 학교가

초등학교나 중학교였다면 고등학교 졸업을 향해 상당하고 측정 가능한 진전을 이루었거나 또는 (2) 귀하가 등록되어 있는 학교의 졸업을 향해 상당하고 측정 가능한 진전을 이루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수료증이나 주법으로 인정된 동등 자격을 얻거나 종합교육개발(GED) 시험이나 기타 주에서 인정하는 동등 시험에 합격하도록 학생들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현재 등록되어 있으며 귀하의 케이스가 미국 이민법에 의해 유예된 경우, 귀하가 영장 요청이 고려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갱신 요청 시에 귀하가 고등학교 수료증이나 인정된 동등 자격을 얻었거나 또는 GED 시험이나 기타 주에서 인정하는 동등 시험에 합격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중등 이후의 교육, 직업 훈련 또는 취업 배치에 이르도록 고안된 교육, 읽고 쓰기 또는 커리어 훈련 프로그램 직업 훈련 포함에 현재 등록되어 있으며 귀하의 케이스가 미국 이민법에 의해 유예된 경우, 귀하의 연장 요청이 고려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갱신 요청에 귀하가 중등 이후 교육에 등록되어 있거나, 훈련 받은 분야에 취업이 되었거나, 프로그램 이슈를 향해 상당하고 측정 가능한 진전을 이루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갱신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추후가 제공될 것입니다.

[위로 돌아가기](#)

## 여행

### 문1: 미국을 잠시 떠난 경우 연속 거주 요건이 중단되는가?

답1: 미국에서 잠시 동안 우연하게 선의로 떠난 것은 연속 거주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어느 기간 동안 미국을 떠나 있었던 경우, 그것이 2012년 8월 15일 이전이었으며 또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부재는 잠시 동안 우연하게 선의에 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부재가 단기간이었으며 부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합리적으로 계산되었으며
2. 부재가 입국 금지 추방 또는 출국 명령 때문이 아니었으며
3. 부재가 자발적 출국 명령 또는 입국 금지 추방 또는 출국 절차에 처하기 전에 행정적 자발적 출국 허가 때문이 아니었으며 또한
4. 부재의 목적 및 또는 미국 외에 있는 동안 요청자의 활동이 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 새 항목 문2: 미국 이민법이나의 케이스에 대한 조차를 유예할 것인지 결정하기 전에 미국 외로 여행할 수 있는가 ?

답2: 아닙니다. 2012년 8월 15일 이후에 미국 외로 여행할 경우 본 절차에 의한 유예 조차가 고려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이민법이 귀하의 케이스에 대한 조차를 유예하는 경우, 사전 일시 입국 허가를 신청하여 미국 이민법으로부터 받은 경우 미국 외로 여행하도록 허용됩니다.

2012

년 8월 15일 이전

참조 ) 어뷰클판단하기 위해 미국 이민법의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참고 귀하에 대해 추방 또는 출국 명령이 내려졌으며 귀하가 미국을 떠나는 경우, 출국으로 인해 추방이 고려될 수 있으며 미래에 심각한 이민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여행 지침

여행 날짜  
여행 유형  
연속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가  
2012 년 8월15일전

- 잠시 동안
- 우연
- 선의

아니오

- 장기간
- 입국 금지 추방 또는 출국 명령때문
- 범죄 행위에 참여하기 위해

예

2012 년 8월 15일 후에 그리고 유예 조처를 요청한 후에  
• 언제든지

예.

예. 귀하의 요청이 검토를 받고있는 동안은 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국토안보부에서 귀하의 케이스에 대한 조치 유예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한 그리고 그럴 때까지는 사전 일시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2 년 8월 15일 후에 그리고 유예 조처를 요청한 후에  
• 언제든지

**새 항목 문3: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절차에 따라 나의 케이스가 유예된 경우, 미국으로 여행할 수 있는가?**

답3: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민국이 귀하의 케이스에 대한 조치 유예를 결정하였고 귀하가 미국으로 여행하기를 원하는 경우 -131

블록식인 '여행 신청 문서'

제출하고 해당 신청료(\$360)를 지불함으로써 사전 일시입국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요청서에 서술한 상황에 근거하여 귀하의 해외 여행 목적이 타당한지 미국이민국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도주의적 목적, 교육적 목적 또는 취업 목적을 위해 여행하는 경우 미국이민국은 사전 일시입국을 허락할 것입니다.

미국이민국에서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절차에 따라 귀하의 케이스에 대한 조치 유예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한 그리고 그럴 때까지는 사전 일시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요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사전 일시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전 일시입국 허가 요청은 개별로 고려됩니다 .

미국이민국에서 추방 또는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절차에 의거하여 귀하의 케이스에 대한 조치 유예한 경우, 위에서 서술된 사전 일시입국 허가에 대한 지침을 충족하면 그래도 사전 일시입국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전 일시입국 허가를 받으면 실제로 미국을 떠나기 전에 이민심사국 (EOIR)에서 케이스를 재심의하고 추방 절차에 대한 행정적 종료 또는 종결을 얻도록 시도해야 합니다. 귀하의 케이스를 재심의하도록 EOIR에 요청한 후에도 EOIR이 귀하의 요청을 허락하기까지는 미국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추방 또는 출국 명령이 내려진 후에 출국하며 귀하의 출국 절차가 재개되지 않았으며 행정적으로 종료되거나 종결된 경우, 출국할 경우 추방이 고칠 수 있으며 미래에 심각한 이민 영향이 미쳐질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888-351-4024 [비행요청이나출국요청@ice.dhs.gov](mailto:비행요청이나출국요청@ice.dhs.gov) (온라인 직원 근무 [EROPublicAdvocate@ice.dhs.gov](mailto:EROPublicAdvocate@ice.dhs.gov))를 통하여 이메일로 이민관서집행국의 대중오피스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안보 및 공중 안전

**문1: 중죄 중대한 경범죄 또는 다수의 경범죄 판결을 받은 경우, 새로운 이 절차에 의하여 작권자량 조처를 받을 수 있는가?**

답1: 아닙니다. 귀하가 중죄 중대한 경범죄 같은 날 발생하지 않았고 같은 행동, 누락 또는 위법행위의 계획으로부터 초과되지 않은 3회 이상의 기타 경범죄 판결을 받은 경우,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국토안보부에서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면 새로운 절차에 의거한 유예 조처가 고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문2: 어떤 범죄가 중죄에 해당되는가?**

답2: 중죄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연방, 주 또는 지방 형사 범죄입니다.

**문3: 어떤 범죄가 중대한 경범죄에 해당되는가?**

답3: 본 절차와 관련하여 중대한 경범죄는 연방법에 의해 규정되며 구체적으로 허가된 최대 징역 형가 1년 이하이지만 5일을 초과하는 경범죄)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경범죄입니다:

1. 부과된 형벌에 상관없이 가정 폭력 범죄상적 학대 또는 착취 강도, 불법 총기 소지 또는 사용, 마약 유통 또는 밀매 또는 음주 운전 또는
2. 위에 나열된 범죄가 아닌 경우, 개인이 90일 이상의 구류 처벌을 받은 범죄 형벌은 실제 구류 시간을 포함해야 하므로 집행 유예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류 시간은 미국 이민관서집행국(ICE)에서 발급한 구금 연장 영장에 대해 주 또는 지방 법 집행관이 응함에 따라 형사 범죄 처벌을 초과하여 복역한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케이스에 대한 조치 유예 여부 결정은 상황을 총체적으로 고쳐야 내리는 개별화된 자량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위에 나열한 범위 경범죄의 유무가 반드시 결정적 요인이 되지는 않지만 자심 대상이 아닌 자량권 행사에서 고쳐는 요소입니다. 국토안보부는 90일 이하의 구류형을 받은 단일 형사 범죄에 근거하여 한 개인이 유예 조처를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할 자량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4: 어떤 범죄가 중대하지 않은 경범죄에 해당되는가?**

답4: 본 절차와 관련하여 중대하지 않은 경범죄는 연방법에 의해 규정되며 구체적으로 허가된 최대 징역 형가 1년 이하이지만 5일을 초과하는 경범죄)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경범죄입니다:

1. 가정 폭력 범죄가 아닌 성적 학대 또는 착취 강도, 불법 총기 소지 또는 사용, 마약 유통 또는 밀매 또는 음주 운전 또한
2. 해당 개인이 90일 이하의 구류 처벌을 받은 범죄 구류 시간은 이민관서집행국(ICE)에서 발급한 구금 연장 영장에 대해 주 또는 지방 법 집행관이 응함에 따라 형사 범죄 처벌을 초과하여 복역한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케이스에 대한 조치 유예 여부 결정은 상황을 총체적으로 고쳐야 내리는 개별화된 자량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위에 나열한 범위 경범죄의 유무가 반드시 결정적 요인이 되지는 않지만 자심 대상이 아닌 자량권 행사에서 고쳐는 요소입니다.

문5: 면허없이 운전한 것과 같은 경미한 교통 위반이 있는 경우, 본인이 새로운 본 절차에 의거하여 직권 재량 행사의 고려 받을 수 없게 하는 3회 이상의 중대하지 않은 경범죄 로 계산되는 중대하지 않은 경범죄로 간주되는가 ?

답5: 경미한 교통 위반은 본 절차에서 경범죄로 간주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체적 상황 하에서 직권 재량 행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귀하의 전체 범죄 경력을 다른 사실들과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은 내진 형벌에 상관 없이 중대한 경범죄임을 강조합니다.

문6: 주 이민법에 의해 중죄 또는 경범죄로 취급되는 범죄들이 본 절차에서 중죄 또는 경범죄로 간주되는가?

답6: 아닙니다. 주 이민법에 의해 중죄 또는 경범죄로 규정되는 이민 관련 범죄는 본 절차에 의거하여 유예 조치 고려 요청을 검토할 때 실격 중죄 또는 경범죄로 취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7: 국토안보부는 나의 말소된 또는 청소년 유죄 판결을 직권 재량 행사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범죄로 간주하는가?

답7: 말소된 유죄 판결과 청소년 유죄 판결은 자동으로 실격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요청은 해당 상황 하에서 유리한 직권 재량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지 여부를 판단기 위해 개별로 평가됩니다. 귀하가 청소년이지만 성인으로 재판이 실시되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절차를 위해서는 성인으로 취급될 것입니다.

문8: 무엇이 국가 안보 또는 공공 안전 위협에 해당되는가?

답8: 귀하의 유예 조치 요청에 대한 심사 중에 실시된 신원조사나 드러난 기타 정보가 귀하의 미국내 존재가 공중 안전이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 국토안보부가 여의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판단을 내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권 재량 행사에 대한 고려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협을 제거하는 요소에는 범죄조직 구성원 범죄 활동 참여 또는 미국을 위협하는 활동 참여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9: 나는 추방 절차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본 절차에 의거한 유예 조치 행사를 위한 자침을 충족시킨다고 믿는 경우, CBP 또는 ICE와의 만남을 통하여나 자신을 추방 절차에 참여해야 하나?

답9: 아닙니다. 귀하가 추방 절차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자침을 충족시킨다고 믿는 경우, 아래에 약속된 절차에 의거하여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요청을 미국 이민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로 돌아가기](#)

## 신청 절차

문1: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를 어떻게 요청하는가?

답1: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를 미국 이민부에 요청하려면 [I-821D](#)

[유예 조치 고려](#)

양식을 미국 이민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료 \$465

양식인 '이동기 도착지'

양식 '추업 허가'

신청서, '양식 65WS'와 함께 제출하여 귀하의 경제적 고용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작성된 \$465 양식을 (동 양식을 위한 해당 신청료 총액 \$465와 함께)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국 이민부는 귀하의 유예 조치 요청을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식 설명서를 읽어 모든 필수 요청 증빙 서류가 반드시 제출되도록 하십시오.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요청서를 미국 이민부 사서함(Lockbox)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우송 주소와 요청은 [www.uscis.gov/i-821d](http://www.uscis.gov/i-821d)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청자의 I-821D 양식 65, I 양식 및 765

양식인 '작업지'

요청이 완전하게 제출되었는지 검토합니다. 요청이 완전하다고 판단하면 미국 이민부는 수령 통지를 보내드립니다. 그런 다음 미국 이민부는 생체인식 서비스를 위한 신청자 원센터(ASC) 방문 약속을 알리는 통지를 보내드립니다. 통지서에 있는 지시사항을 반드시 읽고 따라야 합니다. 생체인식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귀하의 유예 조치 고려

요청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요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1145 **불식인 신청** 신청창원- 작성함으로써 요청자의 양식이 수락되었음을 알리는 이메일 및/또는 문자 메시지를 받도록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요청은 **별적으로** 간별로 검토됩니다. 미국이민국은 추가 정보나 증거자료를 귀하에게 요청할 수도 있고, 미국이민국 사무소에 출두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민국은 결정을 서면으로 귀하에게 통보해드립니다.

**참고:** 추방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최종 출국 명령이 내려졌거나, 자발적 출발 명령이 내려진 사람들을 이민 구급 하에 있지 않는 한 포함하여 자침을 충족한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본 절차를 통하여 미국이민국에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민 구급 하에 있으며 자침을 충족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미국이민국에 유예 조치 고려를 요청하지 말고 구급 담당관이나 888-351-4024 번의 핫라인을 통하거나 (월요일 오전 9시 이후 5시 직원 근무) [EROPublicAdvocate@ice.dhs.gov](mailto:EROPublicAdvocate@ice.dhs.gov) 를 통하여 이메일로 이민판서집행국의 대중응호실에 자신의 신분을 알려주세요.

## 문2

## 나의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

답2: 예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절차 하에서 미국이민국이 직권 자량 행사 여부를 고려하기 전에 요청자는 신상 및 생체인식 배경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요청자가 중죄 중대한 경범죄 같은 날 발생하지 않았고 같은 행동, 누락 또는 위법행위의 계획으로부터 초과되지 않은 3회 이상의 기타 경범죄 판결을 받았거나 달리 국가 안보나 치안에 위협을 가하는 경우, 국토안보부가 예외적인 상황이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가 고려되지 않을 것입니다.

## 문3: 신원 조화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답3: 신원 조화는 해당자가 제공한 신상 및 생체인식 정보를 국토안보부와 기타 연방 정부 기관이 유지하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대비하여 점검하는 작업을 포함합니다.

## 문4: 이 절차에 대해 수수료 포기 또는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가?

답4: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절차와 관련된 취업 허가 신청의 경우 수수료 포기는 없습니다. 자급히 제한된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 요청은 해당자가 자신의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요청을 수수료 없이 제출하기 전에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한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신과 증빙서류를 미국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

- 18 세 미만이거나, 무주택자이거나, 위탁 시설 거주자이거나, **신체 장애인** 이거나, **자원이 없으며** 그리고 신청자의 소득이 미국 빈곤 수준의 150% 미만인 경우.
- 심각한 만성 장애를 앓기 때문에 자신을 돌볼 수 없으며 신청자의 소득이 미국 빈곤 수준의 150% 미만인 경우.
- 요청 시 자산이나 직계 가족을 위한 비보상 의료비의 결과로 지난 12개월 동안 \$25,000 이상의 채무가 누적되었으며 신청자의 소득이 미국 빈곤 수준의 150% 미만인 경우.

수수료 면제 요청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 [www.uscis.gov/childhoodarrivals](http://www.uscis.gov/childhoodarrivals) 에서 제공됩니다.

귀하가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요청을 수수료 없이 제출하기 전에 본 요청이 제출되고 결정되어야 합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요청을 제출할 당시에 상기 조건 중 어느 것이든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증거로 미국이민국은

- 요청자의 무주택이나 부모나 다른 식구의 재정 자원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 또는 종교 단체의 서신/문서를 받습니다.

- 소득세 신고서 은행 내역서 봉급 전표 또는 기타 믿을 만한 소득 수준 입증자료의 사본을 받습니다. 신청자가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은행 구좌가 없으며 맞또는 소득 수준을 입증할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신청자나 믿을 만한 제3자의 선사본질서도 증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최소한 \$25,000의 비보상 의료비에 대한료 기록, 보험 기록, 은행 내역서 또는 기타 믿을 만한 입증자료의 사본을 받습니다.
- 증거 요청(RFE)을 통해 사실에 대한 질문을 다룹니다.

**문5: 이 절차 하에서 미국이민국이 내린 결정에 대한 감독 심사가 있습니까?**

답5: 예 미국이민국은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요청 고려를 위해 일정한 절차가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4

개 서비스 센터에서 모

심사로 회부하도록 당관들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문6: 본 절차에 의한 직권 자량 행사 요청의 심사를 담당하는 미국이민국 직원은 특수 훈련을 받습니까?**

답6: 예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요청의 고려를 담당하는 미국이민국 직원은 특수 훈련을 받을 것입니다 .

**새 항목 문7. 단체 지원 행사에서 유예 조치 요청자들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와 인가 대리인은 미국이민국에 양식을 제출해야 하는가?**

답7. 강연회 장소에서 개인에게 무료 지원을 제공하며 강연회 후에 그 개인을 대리하려는 의도를 가진 변호사나 인가 대리인은 6-28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강연회 장소에서 개인에게 무료 지원을 제공하지만 강연회 후에 그 개인을 대리하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은 변호사나 인가 대리인은 해당 개인과의 관계의 정도와 제공하는 지원의 성격과 유형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여 변호사나 인가 대리인 6-28 양식 제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양식이 제출되지 않은 개인과 미국이민국에 제공하는 것이 그 상황에서 적합한 판단해야 합니다.

**새 항목 문8. 개인은 언제 작성지로서 I-821D 양식에 서명해야 하는가?**

답8. 요청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I-821D 양식을 작성하기 부분을 가져야 합니다.

양식에 서명해야 하는가?

양식을 작성하기

**새 항목 문9. I-765 양식 '취입 허가 신청'의 9번 질문을 어떻게 답**

답9.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요청의 일부로 I-765 양식을 제출하는 경우 귀하에게 공식적으로 발급한 사회 보장 번호를 나열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양식 '취입 허가 신청'의 9번 질문을 어떻게 답

양식을 제출하는 경우

[위로 돌아가기](#)

## 결정 및 갱신

**문1: 미국이민국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가?**

답1: 아닙니다. 미국이민국이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재심사 또는 재고려를 신청할 수 없으며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민국은 자체 자량 결정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모든 절차 지침을 충족하였으며 귀하의 요청이 다음 중 한 오류로 인해 거부되었다고 믿는 경우 '서비스 요청 관리 도구 (SRMT)' 절차를 사용하여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미국이민국이 포기를 근거로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요청을 거부하였으며 귀하가 지장된 시간 내에 증거 요청에 대해 응답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또는

- 증거 요청발급 전에 구하가 AR11 양식 [www.uscis.gov](http://www.uscis.gov)을 제출하였는지와 주소를 온라인으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민국이 증거 요청을 잘못된 주소로 우송한 경우.

**문2: 나의 경우에 미국이민국이 유예 조치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나는 추방 절차를 받게 될까?**

답2: 이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요청을 제출하였으며 미국이민국이 구하의 케이스에 대한 조치를 유예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미국이민국은 미국 이민관서집행국(ICE)에 대한 케이스 회부 및 출두 통지 (NTA) 발급에 관한 이민국의 정책 지침을 적용할 것입니다. 요청자의 케이스가 형사 범죄 사기 또는 국가 안보나 차안에 대한 위협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요청자의 케이스는 예외적인 상황이었다고 국토안보부에서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방 절차를 위해 이민관서집행국에 회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해당 출두 통지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www.uscis.gov/NTA](http://www.uscis.gov/NTA) 를 방문하십시오. 총체적 상황을 검토한 후에 미국이민국이 구하의 케이스에 대한 조치를 유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미국이민국은 마찬가지로 자체 지령권을 행사하며 출두 통지를 구하에게 발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3: 나의 케이스에 대한 유예 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가?**

답3: 예 종료되지 않는 한, 이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절차에 의거 케이스가 유예된 사람들은 2년의 기간 동안 추방 절차를 겪게 되거나 미국에서 추방되지 않을 것입니다. 유예 조치 기간 연장의 고려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012년 6월 15일에 30세를 초과하지 않는 한 31세가 된 후에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요청은 개별적으로 됩니다.

**문4: 나의 유예 조치 기간이 연장된 경우, 취업 허가 연장을 다시 신청해야 하나?**

답4: 예 미국이민국이 최초 2년 이후의 추가 기간에 대해 조치를 유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구하의 취업 허가 연장도 요청해야 합니다.

[위로 돌아가기](#)

## 증거

다음 표에는 본 절차에 의한 유예 조치 고려 지침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예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수락되는 서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821D 양식 이동기 도착자 조치 고려](#) 지시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양식 이동기 도착자](#)

**지침 충족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할 서류의 예 신분증**

- 여권이나 출신국의 국가 신분 증명 서류
- 사진이 첨부된 출생 증명서
- 사진이 첨부된 학교 또는 군대 신분증
- 구하의 이름과 사진이 포함된 미국 정부의 이민 또는 기타 문서

**16 회 생일 이전에 미국에 왔다는 증거**

- 입국 스탬프가 있는 여권
- I-94/I-95/I-94W 양식
- 구하가 다닌 미국 학교의 학교 기록
- 구하의 입국일을 명시하는 이민국 또는 국토안보부 서류 (862 양식, 출두 통지)
- 여행 기록

- 병원 또는 의료 기록

이민 신분 증명

- 허가된 체류 만료일이 포함된 94/I-95/I-94W 양식
- 2012년 6월 15일부로 발급된 입국 금지 추방 또는 출국 최종
- 출국 절차에 처하게 하는 기소 서류

2012년 6월 15일에 미국 내 체류 증거

- 임대료 영수증이나 전기 가스 수도요금 청구서
- 취업 기록(봉급 전표, W2 양식, 등)
- 학교 기록(편지 상조표 등)
- 군대 기록(DD214 양식이나 NGB 양식 22)
- 종교 예식 참여를 확인하는 종교단체의 공식 기록
- 국내에서 보낸 돈에 대한 모니오더 영수증 사본
- 여권 기재 사항
- 미국에서 태어난 어린이의 출생 증명서
- 날짜가 표시된 은행 거래
- 사회 보장 카드
- 자동차 면허 영수증 또는 등록증
- 부동산 증서 모기지 임대 계약서
- 세금 영수증 보험 증서

2007

년 6월 15일 이래로 계속 미국에서 거주하였다는 증거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요청 시에 학생 신분 에 대한 증명

- 학교 이름과 학교를 다닌 기간과 현재 교육 수준 또는 학년을 보여주는 미국에서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교 기록(성적 증명서 상조표 등)
- 미국 고등학교 수료증이나 이수증
- 미국 GED 증서

미국 군대나 미국 해안경비대에서 명예 제대한 여비역이라는 증거

- DD-214 양식, 현역 제대 증서
- NGB 양식 22, 주방우군 해제 보고 및 복무 기록
- 군대 요원 기록
- 군대 건강 기록

문1: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를 위해 내가 지침을 충족한다는 증거로 신서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는가 ?

답1: 일반적으로 선서진술서는 그 자체로는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를 위해 귀하가 미국 이민국의 지침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치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충분치 않거나 결여된 경우에만 다음 지침의 충족을 뒷받침하기 위해 선서진술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5 년 연속 거주 요건의 충족을 입증하는 서류에 있어서 공백 또는
- 5 년의 필수 연속 거주 기간 중 잠시 동

상기 기준과 관련된 선서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사건과 상황을 개인적으로 직접 아는 귀하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선서하거나 맹세한 둘 이상의 선서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서진술서가 이 지침의 어느 사항에 대해서 증거서류의 부재나 결여를 극복하기에 충분치 않은 것으로 미국 이민국에서 판단하는 경우, 귀하가 이 지침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요청을 발행할 것입니다.

미국 이민국은 다음의 충족의 증거로 선서진술서를 수락하지 않습니다.

- 현재 재학 중이거나 졸업했거나 고등학교로부터 수료증을 받았거나 종합교육개발(GED) 증서를 받았거나 미국 해안경비대나 군대의 명예 제대 재향군인이며
- 2012 년 6월 15일에 실제로 미국 내에 있었으며
- 16 회 생일에 이르기 전에 미국으로 왔으며
- 2012 년 6월 15일 현재 31세 미만이었으며 또한
- 해당되는 귀하의 범죄 경력

상기 지침 중 어느 지침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유일한 증거가 선서진술서인 경우, 미국 이민국은 귀하가 이 지침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그 지침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요청을 발급할 것입니다.

## 문2: 미국 이민국은 내가 특정 지침을 충족하였다는 상황 증거를 고려할 것인가?

답2: 사용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충분치 않거나 결여된 경우 다음 지침 및 사실 표시를 입증하기 위해 그리고 다음 사항을 보아주기 위해 상황 증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12 년 6월 15일에 실제로 미국 내에 있었으며
- 16 회 생일에 이르기 전에 미국으로 왔으며
- 필수 5년 기간의 일부에 대한 미국 내 연속 거주자의 직접 증거를 제시하며 상황 증거가 직접 증거에 의해 입증된 연속 거주 기간 내의 공백을 채우는데만 사용되는 한 5년 연속 거주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 필수 5년 연속 거주 기간 중 일체의 미국 외 여행은 잠시 동안 우연하게 선의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 이민국은 귀하의 다음 사항을 입증하기 위한 아래 지침의 증거로 상황 증거를 수락하지는 않습니다.

- 2012 년 6월 15일 현재 31세 미만이었으며 또한
- 현재 재학 중이거나 졸업했거나 고등학교로부터 수료증을 받았거나 종합교육개발(GED) 증서를 받았거나 미국 해안경비대나 군대의 명예 제대 재향군인임

예를 들면 2012년6월15일 현재 미국 내 거주를 입증하는 증거서류가 없는 경우, 2012년6월15일 직전 및 직후에 미국에 있었다는 믿을만한 증거서류(동 서류는 제시된 사실에 의거하여) 2012년 6월15일에 거주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게 함)를 제출함으로써 상황적으로 자침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황 증거는 고등학교 졸업을 입증하기 위해 수락되지 않습니다. 이 자침을 충족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새 항목 문3. 2007년6월15일 이래로 미국내 연속 거주를 입증하기 위해 그 기간 중 매일 또는 매월 거주를 입증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답3. 연속 거주 자침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007년6월15일부터 요청 시까지 미국 내에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거주를 가능한 한 최대한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그 기간의 매일 또는 매월을 직접적인 증거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최소한 이 기간의 매년에 대해 거주 입증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미국 이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 이민은 총체적으로 서류를 검토하여 2007년6월15일 이래로 해당 기간 동안 구하 미국 내에 연속 거주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특정 기간에 대한 서류 상의 공백으로 인해 예를 들어 공백 기간이 길거나 잠시 동안 우연하게 선의에 의한 것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의 미국 외 거주가 있었을 수도 있음이 특상 나타나는 경우, 구하의 연속 거주에 대해 의심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서류 상의 공백으로 인해 의문이 제기되면 미국 이민은 요청자가 주장하는 연속 거주를 뒷받침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종 요청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5

5년 연속 거주 요건

거주 요건과 관련된 선서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 문서 상의 공백이 있는 해당 기간 중의 사건과 상황을 개인적으로 직접 아는 요청자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선서하거나 맹세한 둘 이상의 선서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서진술서는 연속 거주 공백을 설명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5년 연속 거주 요건의 충족을 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새 항목 문4.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요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종업원에게 그의 취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정보가 나나 나의 회사에 불리하게 이민 집행 목적으로 사용되는가?**

답4. 구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매우 심한 형법 위반이나 광범위한 남용의 증거가 있지 않은 한 이 정보를 이민법 274A 항에 의거하여 민간 이민 집행 목적으로 이민

[위로 돌아가기](#)

## 다른 이민 절차가 진행 중인 케이스

**문1: 2012년6월15일 현재 망명 또는 출국 취소 신청이 미국 이민국이나 이민심사국(EOIR)에 계류 중이었다면 나는 불법 신분자로 간주되는가?**

답1: 예 2012년6월15일 현재 망명 또는 출국 취소 신청이나 유사한 구제 신청이 미국 이민국이나 이민심사국 (EOIR)에 계류 중이었지만 합법적 신분이 없었던 경우,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2: 이민판세 집행국의 보호 하에 이민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를 미국 이민국에 요청할 수 있는가?**

답2: 아닙니다. 현재 이민 구금 하에 있다면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를 미국 이민국에 요청할 수 없습니다. 구하가 본 절차의 자침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구금 담당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리거나 이민판세 집행국의 대중응호실에 문의하여 이민판세 집행국이 구하의 케이스를 심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1



888-351-4024

변호사 알리옌을 통해 (월시 직원 근무)

[EROPublicAdvocate@ice.dhs.gov](mailto:EROPublicAdvocate@ice.dhs.gov)

**문3: 이민세집행국에 의해 조만간 출국 조치될 것이지만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지침을 충족한다고 믿는 경우, 출국 전에 케이스 검토를 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답3: 지침 충족을 입증할 수 있다고 믿으며 조만간 출국 조치될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 즉시 법 집행 자원 센터의 핫라인 -855-448-6903( 주88일5투024간 직원 근무)에 연락하거나 통하거나 (월요일 오전9시오후 5시 직원 근무) [EROPublicAdvocate@ice.dhs.gov](mailto:EROPublicAdvocate@ice.dhs.gov)를 통하여 이메일로 이민세집행국의 대중응호실에 연락하십시오 .

**문4: 개인이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지침을 충족하며 관세국경보호국(CBP)이나 이민세집행국에 발각된 경우, 이들에 대해 출국 절차가 진행되는가?**

답4: 본 정책은 관세국경보호국(CBP)과 이민세집행국이 우선순위가 높은 케이스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국토안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개인이 본 절차의 지침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국경보호국(CBP)이나 이민세집행국은 간별로 재방문을 행사하여 작위자가 체포되거나, 출국 절차를 받거나, 출국 조치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본 정책에 비추어 본인이 출국 절차의 적용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믿는 경우, 법 집행 자원 센터의 핫라인-855-448-6903( 주88일5투024간 직원 근무)에 연락하거나 핫라인을 통하거나 (월요일 오전9시오후 5시 직원 근무) [EROPublicAdvocate@ice.dhs.gov](mailto:EROPublicAdvocate@ice.dhs.gov)를 통하여 이메일로 이민세집행국의 대중응호실에 연락해야 합니다.

**문5: 간별 심사 과정에서 행정적 종료 제안을 받았거나 나의 케이스가 간별 심사 과정의 일환으로 종결된 경우, 나는 본 과정에 따라 유예 조치 대상으로 고될 수 있는가?**

답5: 예 귀하가 지침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간별 심사 과정에 따라 행정적 종료나 종결 제안을 수락하셨더라도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지침을 충족하며 이민세집행국의 간별 심사의 일환으로 재방문 행사가 타당한 것으로 이미 확인된 경우, 이민세집행국은 갱신 조건의 2년 기간 유예 조치를 이미 귀하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문6: 간별 심사 과정에서 행정적 종료 제안을 받은 경우, 본 과정에 따라 유예 조치 대상으로 고될 수 있는가?**

답6: 예 귀하가 지침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간별 심사 과정에 따라 행정적 종료 제안을 거부하셨더라도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를 미국 이민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7: 나의 케이스가 간별 심사 과정의 일환으로 검토되었지만 행정적 종료 제안을 받지 못한 경우, 본 과정에 따라 유예 조치 대상으로 고될 수 있는가?**

답7: 예 귀하가 지침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간별 심사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된 케이스 심사에서 행정적 종료 제안이 제공되지 않았더라도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를 미국 이민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8: 본 과정의 지침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2011**

**년 6월 직권 자량**

**수 있다고 믿는 사람과 관련된 케이스를 이민세집행국과 미국 이민국은 어떻게 취급하는가?**

답8: 귀하가 지침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거나 달리 직권 자량의 행사를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귀하의 케이스에 대한 조치 유예를 거부할 것입니다. 현재 출국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최종 명령이 내려졌거나, 자발적 출발 명령이 내려진 경우, 이민세집행국의 대중응호실이나 현지 현장 사무 디렉터에 대한 요청을 비롯하여 이민세집행국의 확립된 경로를 통하여 이민세집행국의 2011년 6월 직권 자량 공문에 의거하여 직권 자량의 행사 여부를 고려하도록 이민세집행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은 이민세집행국의 2011년 6월 직권 자량 공문에 의거한 심사 요청을 고려하지

문9: 본 과정의 지침을 충족하며 주 또는 지방 법 집행관에 의해 체포된 후 이민세집행국의 구금 연장 영장이 발부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9: 지침을 충족하며 구금 연장 영장을 발부 받은 경우, 즉시 법 집행 자원 센터의 핫라인 1855-448-6903( 주 월요일부터 24시간 주원 근무)에 연락하거나 1 부문의 열람실을 통하여( 월 오후 5시 직원 근무) [EROPublicAdvocate@ice.dhs.gov](mailto:EROPublicAdvocate@ice.dhs.gov) 를 통하여 이메일로 이민세집행국의 대중응호실에 연락해야 합니다.

[위로 돌아가기](#)

## 사기 회피 및 방지

문1: 수수료를 지불하면 나의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요청을 신속히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데 이것은 사실인가?

답1: 아닙니다. 유예 조치에 대한 신속 처리는 없습니다. 부장직업자들이 그들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면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귀하를 속여서 돈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민 사기로부터 귀하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보려면 [사기 회피\(Avoid Scams\)](#) ( [페이지 101](#) ) 방문하십시오.

미국이민국이나 국토안보부 같은 공식 정부 정보원으로부터 이동기 도착지에 대한 유예 조치 요청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야 합니다.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경우, 저희 [Find Legal Services](#) ( [페이지 101](#) ) 방문하십시오. 방문하여 유대 변호사나 인가 대리인을 선택하는 방법을 살펴보십시오.

문2: 새로운 절차와 관련하여 사기에 관여하는 경우 미국이민국과 이민세집행국은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답2: 새로운 이 절차를 통하여 귀하의 케이스가 유예되게 하거나 노동 허가를 받기 위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대 한도까지 이민 집행 우선순위로 처리되어 형사 소추 및/또는 미국의 출국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위로 돌아가기](#)

최종 갱신 : 09/05/2012

< p >

보다 나은 사용자 경험을 위해서는 Javascript를